

인터넷 FX 딜링거래 약정서

(주)하나은행 앞

년 월 일

본인
주소

(인)

본인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이 약정서에 의한 거래를 함에 있어 이 약정서가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약속합니다.

제1조 (적용거래) 이 약정서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서 은행과 본인간에 이루어지는 현물환(이하 “FX딜링거래”라 함)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하고 특별히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금융시장의 관행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FXKEB 시장환율”이라 함은 은행간 시장환율에 연동하여 “FX딜링거래”의 거래를 목적으로 은행이 본인앞 제시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2. “시장가 주문”이라 함은 은행이 제시한 “FXKEB 시장환율”에 대하여 본인이 승인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3. “지정가 주문”이라 함은 본인이 환율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4. “반대거래”라 함은 은행이 개별 “FX딜링거래”와 동일한 금액 및 만기일을 가진 반대 방향의 외환매매거래를 일으켜 원 거래를 종결시키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3조 (약정의 체결 및 해지)

- ① 이 약정의 체결은 이 ‘인터넷 FX딜링거래 약정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이 약정에 의한 “FX딜링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영업점에 별도의 서면(‘인터넷 FX딜링서비스 이용신청서’)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이 약정의 당사자는 이 약정에 의한 모든 “FX딜링거래”의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약정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사용할 계좌의 등록, 추가, 삭제)

- ①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FX딜링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통화별로 1계좌씩 은행에 등록 또는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가능한 예금종별 및 통화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등록된 계좌와 관련된 모든 “FX딜링거래”의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영업점에 서면으로 등록된 계좌의 추가 또는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본인의 확인 및 비밀번호 등 관련 책임)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이 입력한 본인 아이디, 접속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및 은행이 정한 안전한 인증방법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할 경우, 은행은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이와 같이 처리한 경우 비밀번호 등의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거래시간 및 거래한도) 본인은 은행이 정한 거래시간과 거래한도 이내에서 “FX 딜링거래”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한도는 본인의 외환거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인이 인터넷상의 신청 또는 은행의 영업점에 별도의 서면(“인터넷 FX딜링서비스 이용신청서”)신청을 통해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7조 (거래주문 및 체결)

- ① 주문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FX딜링거래” 주문은 시장가 주문으로 간주하고 처리합니다.
- ② 지정가 주문은 “FXKEB 시장환율”이 본인이 지정한 환율 이상 또는 이하로 변경되었을 때 주문이 체결됩니다.
- ③ 주문 유효기일의 체결 가능시간 종료 시까지 체결되지 않은 지정가 주문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주문 유효기일을 명시하지 않는 지정가 주문의 주문 유효기일은 주문 당일로 합니다.
- ④ OCO (One-cancels-the other) 방식의 지정가 주문은 하나의 주문이 체결되면, 나머지 주문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거래환율)

- ① “FX딜링거래”는 “FXKEB 시장환율”에 수수료를 가감한 환율로 결제합니다.
- ② 외환시장의 폐장 또는 환율이 급등락하는 경우, 은행은 “FXKEB 시장환율”의 제시를 중지하거나, “FX딜링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본인은 “FX딜링거래”의 처리 결과 화면으로 거래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지정가 주문의 체결, 반대거래 결과를 전자적인 수단을 통하여 본인앞 통지하며, “FX딜링거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③ 본인은 제1항 또는 2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당일 중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거래의 변경 또는 취소) 체결된 “FX딜링거래”의 변경 및 취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보증금)

- ① 본인은 당일 결제 이외의 “FX딜링거래”에 대하여 각 “FX딜링거래” 건별로 보증금을 적립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적립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은행은 거래체결과 동시에 본인이 지정한 보증금 출금계좌에서 보증금을 출금하고 거래 종결 후 다시 입금합니다.

제12조 (결제)

- ① 만기일 또는 결제일이 거래체결 당일인 “FX딜링거래”는 거래체결 즉시, 은행이 결제금액 또는 본인의 매도금액을 인출하고, 본인의 매입금액을 입금합니다.
- ② 만기일 또는 결제일이 거래체결 당일 이후인 “FX딜링거래”는 만기일의 은행 영업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결제계좌 또는 매도통화 계좌로 결제금액 또는 매도금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③ 보증금 출금계좌와 결제계좌 또는 매도통화 계좌가 동일한 경우, 적립한 보증금은 만기 결제시 결제금액 또는 매도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13조 (반대거래)

- ① 제 12조의 만기결제시, 결제금액 또는 매도금액이 부족한 경우 은행은 반대거래로 당해 “FX딜링거래”를 종결합니다.
- ② 은행은 반대거래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한 평가손익을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 ③ 제2항의 손익정산에 따른 본인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은행은 손실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 적립액 및 “FX딜링거래” 등록 원화계좌에서 인출합니다.
- ④ 본인은 총손실금액에서 제3항의 은행의 인출액을 차감한 손실금액을 은행에 입금하여야 하며, 손실 발생일 이후에 입금한 경우는 입금일까지 은행이 정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⑤ 제3항의 경우, 은행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통지합니다.

제14조 (계약 불이행 등)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은행은 통지로서 본인과 체결한 모든 또는 일부 거래의 해지, 채무이행의 거부, 거래한도의 감축, 거래주문의 접수 거절 등 은행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1항 내지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 2. 본인이 이 약정서에 따른 채무 또는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의하여 은행이 입은 손해를 은행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본인은 은행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수수료, 비용 부담)

- ① 본인은 “FX딜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체결 및 반대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비용을 부담하고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하며, 이를 지체한 경우 소정의 요율로 계산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수료, 비용, 연체이자 등의 계산방법 및 환율의 적용은 은행이 정하며 은행은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이를 고시하기로 한다. 다만, 본인이 은행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제16조 (이행) 은행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약정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날에 은행이 이 약정서에서 정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동 사유가 해소된 후 가장 빠른 은행영업일 또는 양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7조 (계약통화 이외의 통화) 법원의 판결 또는 청산에 따른 배당 등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계약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급 또는 상환할 경우, 지급 또는 상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 매매율을 적용합니다.

제18조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금지) 이 약정서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를 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거래내용 등에 관한 책임)

- ① 본인은 “FX딜링거래”의 내용과 그에 관한 국내외 외환시장의 관련법규 및 관행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며 자기의 계산 하에 독립된 정보와 판단에 의하여 이 약정에 따른 “FX딜링거래”를 체결합니다.

- ② 은행은 “FX딜링거래”의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 “FX딜링거래”의 결과에 대하여 본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면책조항) 은행에 책임 없는 천재지변, 정전, 전산상의 장애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은행이 제9조 내지 제13조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내용의 통지를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본인의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1조 (규정의 적용)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현물환거래 약정서’,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 및 기타 은행의 예금 관련 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인터넷 FX 딜링거래는 거래체결 후 환율의 변동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이므로, 이 인터넷 FX 딜링거래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이 약정서 및 제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등과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인: _____ (인)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확인

-상기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받고 인감대조를 하였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 · 성명 _____ (인) 점검자 : 직 · 성명 _____ (인)